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KRX3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3 월 11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3 월 11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	(생략)	(업데이트)

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3 월 11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.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<삭제> (순차적 연번 적용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모투자신탁 명칭: 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: (생략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: (생략) **투자비용(동종유형 총보수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<삭제> **투자비용(동종유형 총보수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[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(87055)</td><td>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
[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]
<삭제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3 월 11 일
- 해지된 모투자신탁 (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) 삭제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<table><tr><th colspan="2">모투자신탁명</th><th>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주요투자대상</td><td>주식 70% 이상, 채권 30% 이하</td></tr><tr><td>투자목적</td><td>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</td></tr><tr><td>주요투자</td><td>-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 등</td></tr>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<삭제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table><tr><td></td><td>전략

및
위험관리</td><td>에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국공채, 신용등급 A-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,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.
– 투자가치에 초점을 둔 '코어전략' 수행을 통한 시장 대비 초과수익 추구하며 엄선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.
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</td></tr></table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 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<u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u></td><td rowspan="2">90% 이상</td><td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</td></tr>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 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td>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</td></tr>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<삭제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모투자신탁에의 투자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모투자신탁에의 투자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
<삭제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 총 보수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 총 보수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인덱스증권투자신탁(V-1 호)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C, C-F, C-P, C-P2, C-PE, C-P2E 수익증권 신설
- 보수 인하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3 월 11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2. (생략) 3.~8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2. (현행과 동일) 3.종류 C 수익증권 : 가입제한은 없으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.종류 C-F 수익증권 : 1)집합투자기구 2)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3)100 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 5.종류 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6.종류 C-P2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

		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7.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8.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~2. (생략) 3.~8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~2. (현행과 동일) 3.종류 C 수익증권 4.종류 C-F 수익증권 5.종류 C-P 수익증권 6.종류 C-P2 수익증권 7.종류 C-PE 수익증권 8.종류 C-P2E 수익증권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A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9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874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S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9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A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 [종류 S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

	0.18 <신설>	[종류 C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 [종류 C-F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 [종류 C-P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3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 [종류 C-P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3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 [종류 C-P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6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

		[종류 C-P2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1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

[간이투자설명서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[요약정보]</td><td>
투자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
종류</th><th colspan="4">투자자가 부담하는
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
수수료</th><th>총
보수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동종유형
총보수</th></tr>
<tr><td>수수료선취-
오프라인(A)</td><td>납입금액의
0.5%이내</td><td>1.0400</td><td>0.6874</td><td>0.60</td></tr>
</table>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
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생략)

운용전문인력
(생략)

과세
<신설>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
<신설>
</td><td>
투자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
종류</th><th colspan="4">투자자가 부담하는
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
수수료</th><th>총
보수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동종유형
총보수</th></tr>
<tr><td>수수료선취-
오프라인(A)</td><td>납입금액의
0.5%이내</td><td>0.435</td><td>0.300</td><td>0.71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
오프라인(C)</td><td>없음</td><td>0.735</td><td>0.600</td><td>1.41</td></tr>
</table>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
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업데이트)

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

과세
<신설>
-연금저축계좌의 세제(Class C-P, C-PE 수익자에 한함)
-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2, C-P2E 수익자에 한함)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
<table>
<tr><td>판매
수수료</td><td>수수료
미징구
(C)</td><td>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,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				판매수수료후취형(B)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(AB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n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n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		기타	개인연금(P)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			퇴직연금(P2)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			기관(F)	기관 및 법인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C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 C-F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투자 C-P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 C-P2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 C-P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C-P2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C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 C-F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투자 C-P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 C-P2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 C-P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C-P2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3 월 11 일 - 종류 C, C-F, C-P, C-P2, C-PE, C-P2E 수익증권 신설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- 보수 인하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<table>
<tr><td rowspan="2">판매
수수료</td><td>수수료
미징구
(C)</td><td>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
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
반면 판매보수가
판매수수료선취형(A),
판매수수료후취형(B) 또는
판매수수료선후취형(AB)보다
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
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
시점은 약 n 년이 경과되는
시점입니다. 따라서 n 년 이전에
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
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
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타</td><td>개인연
금
(P)</td><td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
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
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
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
<tr><td>퇴직연
금
(P2)</td><td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
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
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
<tr><td>기관(F)</td><td>기관 및 법인 전용
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
C</td><td>가입제한은 없으며, 선취판매수수료가
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
C-F</td><td>A.집합투자기구
B.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
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
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
C.100 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
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</td></tr>
<tr><td>종류
C-P</td><td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
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</td><td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<추가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A</td><td>수수료선취-오프라</td><td>0.2946</td><td>0.6874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1.0400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판매수수료</th><th>후취판매수수료</th><th>환매수수료</th></tr>
<tr><td>C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td rowspan="7">없음</td></tr>
<tr><td>C-F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투자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C-P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C-P2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C-PE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
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A</td><td>수수료선취-오프라</td><td>0.100</td><td>0.300</td><td>0.020</td><td>0.015</td><td>0.435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	인					
S	수수료 후취-온라인 슈퍼	0.2946	0.3000	0.0400	**0.0180**	0.6526

동종유형총보수
(생략)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

종류형	명칭	1 년	2 년	3 년	5 년	10 년
A	수수료 선취-오프라인	156	268	385	637	1,387

	인					
S	수수료 후취-온라인 슈퍼	0.100	0.100	0.020	0.015	**0.235**
C	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	0.100	0.600	0.020	0.015	**0.735**
C-F	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투자	0.100	0.010	0.020	0.015	**0.145**
C-P	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	0.100	0.330	0.020	0.015	**0.465**
C-P2	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	0.100	0.230	0.020	0.015	**0.365**
C-PE	수수료 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	0.100	0.165	0.020	0.015	**0.300**
C-P2E	수수료 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	0.100	0.115	0.020	0.015	**0.250**

동종유형총보수
(업데이트)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

종류형	명칭	1 년	2 년	3 년	5 년	10 년
A	수수료 선취-오프라인	95	141	190	296	610

<table>
<tr>
<td></td>
<td>
<table>
<tr><td>S</td><td>수수료 후취-온라인 슈퍼</td><td>67</td><td>137</td><td>211</td><td>370</td><td>841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
<table>
<tr><td>S</td><td>수수료 후취-온라인 슈퍼</td><td>24</td><td>49</td><td>76</td><td>133</td><td>303</td></tr>
<tr><td>C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</td><td>75</td><td>154</td><td>237</td><td>416</td><td>947</td></tr>
<tr><td>C-F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투자</td><td>15</td><td>30</td><td>47</td><td>82</td><td>187</td></tr>
<tr><td>C-P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</td><td>48</td><td>98</td><td>150</td><td>263</td><td>599</td></tr>
<tr><td>C-P2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</td><td>37</td><td>77</td><td>118</td><td>207</td><td>471</td></tr>
<tr><td>C-PE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</td><td>31</td><td>63</td><td>97</td><td>170</td><td>387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수수료 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</td><td>26</td><td>53</td><td>81</td><td>142</td><td>322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<신설>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(6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
(7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2, C-P2E 수익증권 가입자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(K-1 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3 월 11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 2.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3.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 4.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 2.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 3.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 3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제 3 조제 3 항제 4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미만으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 3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2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제 3 조제 3 항제 3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미만으로 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<table>
<tr>
<td>[요약정보]</td>
<td>
투자목적 및 전략

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
<table>
<tr><td>모투자신탁 명칭</td><td>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</td></tr>
<tr><td>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</td><td>(생략)</td></tr>
</table>
투자비용(동종유형 총보수)

(생략)

운용전문인력

(생략)
</td>
<td>
투자목적 및 전략

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

<삭제>

투자비용(동종유형 총보수)

(업데이트)

운용전문인력

(업데이트)
</td>
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
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3 월 11 일
- 해지된 모투자신탁 (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) 삭제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
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50% 이상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50% 이상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<table><tr><th colspan="2">모투자신탁명</th><th>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주요투자대상</td><td>주식 70% 이상, 채권 30% 이하</td></tr><tr><td>투자목적</td><td>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.</td></tr><tr><td>주요투자전략

및
위험관리</td><td>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
· 리서치팀과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
· Risk Control 팀,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</td></tr></table></td>
<td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<삭제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[자집합투자기구]
가.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<u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u>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]</td><td>50% 이상</td><td>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/table>
[모집합투자기구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
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[자집합투자기구]
가.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]</td><td>50% 이상</td><td>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/table>
[모집합투자기구]
<삭제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</td>
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/td>
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/td>
</tr>
</table>

에 관한 사항	가. 투자전략 [모집합투자기구] **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**	가. 투자전략 [모집합투자기구] <삭제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**동종유형 총 보수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**동종유형 총 보수** 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3 월 11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.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<삭제> (순차적 연번 적용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모투자신탁 명칭: 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: (생략) **투자비용(동종유형 총보수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<삭제> **투자비용(동종유형 총보수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3 월 11 일
- 해지된 모투자신탁 (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) 삭제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 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
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 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투자대상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 투자신탁[주식]</td><td rowspan="2">90% 이상</td><td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
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]</td><td>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
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투자대상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]</td><td>90% 이상</td><td>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
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<삭제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
비율</th></tr><tr><td><u>하나 UBS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u>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
이상</td></tr>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
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 모투자신탁에의 투자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
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
이상</td></tr>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
<삭제>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 총 보수
(생략)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동종유형 총 보수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